

울산지방법원 2020. 11. 12 선고 2019나164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0. 11. 12 선고 2019나1640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19. 9. 18 선고 2018가단9486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호

피고, 피항소인 C

변론 종결 2020. 10. 15.

판결 선고 2020. 11. 12.

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948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전 1,187㎡ 중 1/2 지분 및 울산 울주군 E

임야 856㎡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. 4. 8. 접수 제65966호로 마친 각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가
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
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
인용한다.

○ 제4쪽 아래에서 5줄의 "공동근로"를 "공공근로"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
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형철

판사안복열

판사김현진